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5
----------	-----------

발의일자	2016. 08. 23.
발 의 자	강철우의원외4명

1. 제안이유

○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5조)

다.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인증기준의 관련 법령을 명시함(안 제4조)

마. 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인증확산 및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의2,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2017년 7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8. 26 ~ 9. 1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증수수료 지원 :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 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 지원 :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 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임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시행 20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8.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